

이달의 초점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보건정책의 전환

한국 청년의 기후불안 특성과 정책적 함의

| 채수미 |

기후위기에 따른 정신건강 부담: 조현병과 치매를 중심으로

| 최지희 |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 보건정책 현황과 시사점

| 김혜윤 |

저탄소 보건의료 체계 구현을 위한 정책 과제

| 하미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 보건정책 현황과 시사점¹⁾

Health Policy and Implications for the Climate Crisis in Korea and Other Major Countries

김혜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기후위기는 이미 국제적으로 중요한 보건정책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건강 보호와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정책의 대응 범위와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중앙부처의 정책 계획들을 중심으로 국내 기후위기 대응 보건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주요국(미국, 영국, 호주)의 건강 적응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 보건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1 들어가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변화가 폭염, 홍수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과 그것에 대한 노출, 그리고 개인과 인구집단의 취약성과 연결되어 건강위험으로 작용함을 설명하며 기후위기가 공중보건학적 대응이 필요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WHO,

202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기후변화의 위험은 폭염, 가뭄과 같은 위험만이 아니라 위해에 대한 노출과 취약 요인이 겹쳐지며 결정되는 것이라 설명한다(IPCC, 2023). 따라서 노출과 취약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중보건학적 전략이 필요한데, 보건의료 분야에서 위해의 속도와

1) 이 글은 채수미, 김혜윤, 윤강재, 박나영. (2025). 기후위기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강 증진 정책 개발 연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강도를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다양한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법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책 시행의 의무가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강구해야 할 것(제37조의 2)을 정하였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과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해 보건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중앙부처의 정책 계획들을 중심으로 국내 기후위기 대응 보건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또한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주요국(미국, 영국, 호주)의 건강 적응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보건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국내 기후위기 대응 보건정책 현황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기후위기를 국가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법적 토대의 중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있는데, 이는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방향과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상위 법률

로 기능한다.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기본 틀을 규정함으로써 부문별·영역별 대응 정책이 연계·추진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이러한 틀 아래에서 건강 부문의 적응 정책에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을 토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이 법령들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계획 및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 중 건강 부문 계획²⁾

기후위기가 농수산물 수급, 생업·생계 등 국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여 과학적 위험 관리와 예방 중심의 적응 역량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삼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2025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 2026~2030)’은 ① 기후위험에 강한 국가 인프라 대전환, ② 사회·경제 전 부문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제고, ③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행 기반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대형화·장기화되는 기후재난에 대비한 국가 기반시설(인프라) 혁신,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신속한 재난 예경보, 취약계층·산업계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주

2) 관계부처 합동. (2025).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전체본]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표 1]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 소관 과제(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및 관련 정책 계획

추진 과제		세부 과제						
▶ 보건복지부								
건강 민감계층 피해 확대에 따른 보호 기반 강화	기후위기 건강손실 예측 및 기후재난 트라우마 심리 지원 [계속]							
	건강도시 활성화 지원 [계속]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및 사회활동 지원 [계속]							
생활 밀착형 기후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무더위와 한파 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강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중점 과제 중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table><tr><td>I. 건강생활 실천 1. 금연 2. 절주 3. 영양 4. 신체활동 5. 구강건강 II. 정신건강 관리 6. 자살예방 7. 치매 8. 중독 9. 지역사회 정신건강</td><td>III.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10. 암 11. 심뇌혈관질환 12. 만성질환 13. 비만 14. 손상 IV. 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td><td>V.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17. 영유아 18. 아동·청소년 19. 여성 20. 노인 21. 장애인 22. 근로자 23. 군인 24. 청년</td><td>VI.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25. 건강 친화적 법제도 개선 26. 건강정보 이해 활용 능력 제고 27.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28. 자원 마련 및 운용 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td><td>VII.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30.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 보호 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 영향 통합 관리 32. 기후위기 건강 대응을 위한 소통·정책· 거버넌스 구축</td></tr></table>				I. 건강생활 실천 1. 금연 2. 절주 3. 영양 4. 신체활동 5. 구강건강 II. 정신건강 관리 6. 자살예방 7. 치매 8. 중독 9. 지역사회 정신건강	III.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10. 암 11. 심뇌혈관질환 12. 만성질환 13. 비만 14. 손상 IV. 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V.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17. 영유아 18. 아동·청소년 19. 여성 20. 노인 21. 장애인 22. 근로자 23. 군인 24. 청년	VI.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25. 건강 친화적 법제도 개선 26. 건강정보 이해 활용 능력 제고 27.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28. 자원 마련 및 운용 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VII.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30.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 보호 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 영향 통합 관리 32. 기후위기 건강 대응을 위한 소통·정책· 거버넌스 구축
I. 건강생활 실천 1. 금연 2. 절주 3. 영양 4. 신체활동 5. 구강건강 II. 정신건강 관리 6. 자살예방 7. 치매 8. 중독 9. 지역사회 정신건강	III.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10. 암 11. 심뇌혈관질환 12. 만성질환 13. 비만 14. 손상 IV. 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V.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17. 영유아 18. 아동·청소년 19. 여성 20. 노인 21. 장애인 22. 근로자 23. 군인 24. 청년	VI.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25. 건강 친화적 법제도 개선 26. 건강정보 이해 활용 능력 제고 27.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28. 자원 마련 및 운용 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VII.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30.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 보호 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 영향 통합 관리 32. 기후위기 건강 대응을 위한 소통·정책· 거버넌스 구축				
▶ 질병관리청								
폭염·한파 대응체계 강화	온열·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강화] 건강 부문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강화 [신규]							
기후변화 기인 질병 연구·감시 및 대응 역량 제고	기후변화 관련 급·만성 질병 연구 [강화] 긴급대응상황실(Emergency operation Center) 운영 [계속] 신종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통한 원헬스 체계 구축 [계속]							
	기후변화 기인 감염병 감시·대응 강화 [강화] 기후보건 중장기 계획 수립·운영 [계속] 기후보건영향평가 내실화 [강화] 기후보건영향평가 자료 수집 및 활용 방안 마련 [계속] 기후재난 관련 건강 영향 발생 대비·대응 [신규]							
	건강 민감계층 피해 확대에 따른 보호 기반 강화							
기후보건 중장기 계획(2024~2028)의 4개 전략								
기후위기 선제적 감시로 기후-질병 경보기능 강화		기후위기 대비·대응체계 강화로 국민 건강 보호						
1 폭염·한파 대비 감시체계 고도화 2 기후 관련 감염병 감시기능 강화 3 기후변화에 따른 병원체 및 매개체 감시체계 강화		1 기후보건 취약집단 건강보호 2 극한기후 건강영향 대비체계 마련 3 국외 질병 유행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강화						
4개 전략								
기후위기 대응 민·관 협력 및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기후보건 적응을 위한 과학적 인프라 구축						
1 기후보건 적응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강화 2 기후위기 관련 감염병 및 보건 분야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3 기후보건 인식제고 교육 및 정보 플랫폼 구축		1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취약성 분석 및 실태조사 2 기후변화 건강대응 연구 및 인프라 구축 3 기후보건영향평가 체계 및 활용성 강화						

출처: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전체본], 관계부처 합동, 2025,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소관 정책 과제를 정리함.;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6~2030)”, 관계부처 합동, 2026, p. 12.; “질병관리청 기후보건 중장기계획”, 질병관리청, 2024. 4, p. 18.

요 골자로 하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pp. 6-7).

지난 3차 대책(2021~2025)의 건강·취약계층 부문은 건강 취약계층의 보호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응체계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취약계층 집단별 특성을 반영하거나 현장 실행력은 부족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5, pp. 19-20). 4차 대책에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보다 실질적인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들이 포함되었다. 보건당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되는 대책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을 주관하며 취약계층과 민감계층의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트라우마 상담 지원 등을 소관 업무로 하고 있다. 특히 4차 대책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의 역할이 확대 및 강조되고 있는데, 기후변화 노출로 인한 응급실 방문에 대한 감시체계의 표본을 확대하고, 관련 질환들에 대한 연구와 건강영향평가를 강화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정책도 주목할 만한데, 여기에는 관련 정책과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서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기후변화와 건강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와 적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Grabow et al., 2023; Peters et al.,

2022). 기후변화가 건강에 영향과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적응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직접적인 개입을 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빈도가 찾고 강도가 점차 강해지는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을 통해 그에 따른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도 이번 정책에서 새로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뒤이어 살펴볼 계획에서 상세히 다룬다.

나.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중 건강 부문 계획³⁾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국가 최상위 계획으로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이 2023년 4월 수립되었다. 이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과 지구온난화 적응,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다 부처 유관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완화’ 정책을 가장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계획에 명시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소관 정책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 예방과 기후보건 감시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 방문 건강관리, 안전 확인, 위급 상황 모니

3) 관계부처 합동. (2023).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터링 등 보건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탄소중립 및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후변화를 반영한 건강도시 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생활공간 및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담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투자 시 석탄채굴·발전산업 분야 투자 제한 전략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ESG 통합 전략 적용 자산군을 해외 주식·채권으로 확대하는 등 금융 안정을 위한 기후 리스크를 관리한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폭염·한파, 대기질 변화 등 기후 요인에 따른 건강 영향을 감시·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단위 건강 적응 역량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온열·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와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체계를 지속·확대하고, 유형별 감염병 감시·대응 체계 운영과 인수공통감염병의 능동적 예찰 및 질병정보 시스템 구축 등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4차 적응 강화 대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과 맥락을 같이한다.

다. 질병관리청 ‘기후보건 중장기계획’ (2024~2028)⁴⁾

질병관리청은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4년 4월 ‘기후보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질병관리청

은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 대상 질환 중심으로 기후 변화 대응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대응책의 근거가 되는 「보건의료기본법」의 개정이 몇 차례 이루어졌는데, 2017년 기후보건영향평가 시행에 대한 사항(제37조의 2), 2024년 2월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 기관 지정에 대한 사항(제37조의 3) 등의 내용을 담아냄으로써 질병관리청의 기후변화 대응 역할이 점차 확대되었다. 법률에 국가의 평가에 대한 의무는 포함되었으나, 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한 사항이 불분명하였고,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2024년 12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강구해야 함(제37조의 2)이 명시되었다.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질병 감시를 통한 선제적 기후위기 대비·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목표 아래 네 가지의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사후 대응에서 ‘선제적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현행 온열·한랭 질환 신고 체계를 발생 정보 감시체계로 강화하여 기후 관련 질병 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는 단순한 질환 발생 신고 시스템을 넘어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경보 및 예측 기능을 강화함을 의미한다. 질환 범위를 감염병에 한정하지 않고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 중증 응급질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별로 심층 조사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4) 질병관리청. (2024. 4.). 질병관리청 기후보건 중장기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둘째, 기후위기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 특정 인구 집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 집단에 대한 건강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의 기후보건 정보 이해력과 인식 제고를 위해 대상자 특성에 맞춘 건강 수칙을 개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를 홍보하여 인식 수준을 제고한다. 한편 건강 보호책의 일환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건강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 및 조사 체계를 도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재난 대응에 관한 평가를 위해 개발한 ‘공중보건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평가 도구(CASPER toolkit)’를 활용하여 현장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계획을 갖고 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 민관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더불어 국민과 보건관리 인력의 기후보건 정보 이해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정보 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 중앙→지역(권역별 대응센터 중심), 민관(학계 및 민관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 보건관리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후 건강 영향에 대한 직무별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 인수공통·매개체·식품 매개 감염병 대상 사람→동물→환경을 포괄하는 통합 감시체계 및 합동 모의훈련 수행 등을 하여 원헬스 기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매개체 및 병원체 감시와 분석에 대한 정보 교류를 위해 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공고

히 한다.

끝으로, 정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과학적 근거 축적과 법적 제도 정비를 병행한다. 미세먼지 대응 및 감염병 기술 개발 등의 연구를 통해 장기적인 연구 기반을 확립하고, 실태조사와 취약성 평가를 정례화하여 정책 수립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2차 기후보건 영향평가 로드맵 수립과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체계 개선을 통해 제도적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계획은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기초에 발맞춰 근거 기반의 과학적 적응 대책과 민감계층 보호를 구체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라. 보건복지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⁵⁾

보건복지부는 기후변화, 기상재난,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집단에 대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건강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28개 중점 과제 중 하나로 ‘감염 및 기후변화성 질환 예방관리’ 분과 중 ‘기후변화성 질환’을 다루기 시작했다. 제5차 계획에서 다룬 주요 내용은 ① 기후변화성 질환 모니터링 체계 구축 운영, ② 기후변화성 질환 예방 수칙 홍보, ③ 기후보건 교육 체계 구축, ④ 기후변화성 질환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보건복지부, 한국건

5) 관계부처 합동. (2026).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6~2030)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강증진개발원, 2021). 그러나 예방 수칙 홍보,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등 취약집단의 건강 보호를 위한 과제들도 대부분 질병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정책이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적 정책 요구에 따라 2026년 3월 수립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야를 신설하여 기존의 정책 과제가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폭염·한파에 따른 온열·한랭 질환, 감염병 등 기후 민감 질환 중심의 대응이 주를 이루었다면 제6차 계획에서는 만성질환, 정신건강, 취약계층 보호, 기후재난 심리 지원 등 국민 건강 전반으로 정책 범위를 확장하였다. 특히 기후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건강 보호 지원, 기후재난 대비 긴급 돌봄체계 구축, 기후위기 건강 영향 감시체계 내실화, 피해자 및 대응 인력 대상 심리 지원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를 환경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국민 건강의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여 건강증진정책 차원에서 예방·감시·돌봄·심리 지원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려는 변화로 볼 수 있다.

제6차 계획에서 다루는 기후위기 민감집단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건설·이동·이주 노동자, 방문건강 돌봄인력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 확대, 지역별·대상집단별 기후적응 시설 설치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일상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폭염 등 기후재난에 대비하여 노인,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인하고 물품을 지원하는 등 여러 층위의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3 국외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보건 분야 정책 동향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주요국의 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법적 기반, 정부 및 공공 조직, 주요 정책 및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 동향을 확인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비교적 오랜 기간 축적된 기후정책 기반 위에서 각각 지역사회 회복력과 보건의료체계 대응 역량을 강화해 온 반면 호주는 최근 국가 차원의 건강·기후 전략을 통해 건강형평성, 웰헬스, 지역사회 기반 대응을 통합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가. 미국: 지역사회 회복력 기반의 기후 민감계층 보호

미국 연방정부는 기후변화와 건강 적응 측면에서 기후변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에 조사와 연구를 지원할 목적으로 1990년 「지구변화연구법(Global Change Research Act)」을 제정하였다. 이후 2021년 미국 의회는 「기후변화 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Climate Change Health Protection and Promotion Act)」을 발의

하였다. 보건부는 국가행동계획(National Strategic Action Plan)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에 취약한 인구집단을 규명하고, 공중보건 및 보건의료 전문가와 국민을 위해 지원하고 소통해야 하며, 기존의 관련 전략을 재검토해 중요한 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채수미 외, 2025).

미국은 보건부와 CDC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CDC 비감염성질환국 소속 국가환경보건센터(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al Health)에서 평가, 사업 운영, 예산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대응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인 기후 적응 지역 이니셔티브(CRSCI: Climate-Ready States and Cities Initiative)는 기후와 건강 관련 협력을 통해 주정부, 도시, 지역이 회복력 구축(BRACE: Building Resilience Against Climate Effects)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13개 주 및 도시에서는 회복력 구축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있다. CDC에서는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가이드를

[표 2] 국외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보건 분야 정책 동향

	 미국	 영국	 호주
관련 법률 정책 기반	「지구변화연구법」(1990), 「기후변화 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2021)	「기후변화법」(2008), 「보건복지법」(2022)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22)」
주관 부처	보건부(MOH),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영국 보건안전보청(UKHS), 산하 기후 및 건강안전센터	보건부, 호주 질병관리청(interim Australian CDC), 산하 국가 건강, 지속 가능성 및 기후 부서(NHSC)
최근 종합계획	국가 기후회복력 프레임워크(National Climate Resilience Framework) 기반 기후 적응 계획(Climate Adaptation Plan 2024-2027)	제3차 국가 적응 계획(Third 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NAP3, 2023-2028)	국가 건강 및 기후 전략(National Health and Climate Strategy 2024-2028)
주요 전략 및 특징	- 온실가스 감축에서 기후변화 적응까지 법 제도 발전 - 취약 인구집단 규명 및 지원, 공중보건 및 보건의료 전문가 지원,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강조 - 소외 지역, 취약 인구집단 문제에 중점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적응을 의무화 - 보건부 역할, 각 보건의료 조직의 기능 및 의무 사항을 명시하여 협력 촉진 - 기후변화 건강 영향에 대한 데이터 생산, 연구 수행, 의사결정 지원에 중점	- 기후 탄력적 지역사회 및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며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기후 대응을 내재화하는데 중점 - 전담 부서에서 보건, 복지, 환경, 사회서비스 부문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허브 역할 수행

출처: “기후위기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강 증진 정책 개발 연구”, 채수미 외, 202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1, 그림 2-17.

제공하고, 기후변화 지역별 건강 영향 보고서 (Preparing for the Regional Health Impacts of Climate Change in the US) 발행 등을 지원하고 있다(CDC, 2020; CDC, 2024).

2021년 미국 보건부 산하에 기후변화 및 건강형평국(OCCHE: Office of Climate Change and Health Equity)이 설립되었는데,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한편 소외 지역과 민감 인구집단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이 조직의 우선순위 사업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더 취약한 지역과 집단을 파악하여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기후변화 건강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폭염, 재난, 만성질환, 환경 불평등 등 다양한 기후 리스크에 대비하는 시스템적 접근과 실시간 정보 제공, 다부문 협력, 정책·재정 지원, 그리고 보건 의료 부문의 탈탄소화까지 포함하여 건강형평성과 적응력을 높이는 포괄적인 대책을 추진하였다. 다만 이 조직은 2025년 1월 환경정의 관련 조직 종료 지시에 따라 운영이 비활성화되었다(채수미 외, 2025).

나. 영국: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기후위험 관리 및 적응 추진

영국은 2008년에 제정된 「기후변화법(Climatic Change Act)」을 근거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적응을 포괄하고 있다. 2022년에 승인된 「보건복지법(Health and Care Act)」은 다양한 서비스

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건의료 조직이 보다 쉽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 법은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에 대한 보건부의 역할을 규명하고 있으며, 각 조직과 기능을 의무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제9조 NHS England; 제53조 NHS trust; 제68조 NHS foundation trust).

영국 보건안보청(UK Health Security Agency)은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및 기타 환경 변화의 영향에 대해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연구 활동을 수행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적응 보고서(Health and care adaptation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2022년에는 기후 및 건강안전센터(Center for Climate and Health Security)를 신설하였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감소 및 적응 문제를 포함해 영양, 해외 이슈 등 여러 건강 안보 정책을 다루려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학제적 전문 지식을 생산하는 전문가 팀을 관리하며 필요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채수미 외, 2025). 보건 분야 감축 정책은 Greener NHS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NHS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파악하여 단계적 감축 계획을 수립하였다(NHS England, n.d.).

영국은 「기후변화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평가 결과는 법에 따라 정책에 연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먼저 정기적인 평가는 기후변화위험평가(CCRA: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로 실시하는데, 기후변화로 발

생활 수 있는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위험을 평가한다. 기후변화위험평가는 「기후변화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독립 자문기구인 기후변화위원회가 운영하는데, 이는 완화위원회와 적응위원회로 구분된다. 위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위험 요인들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책계획을 수립하는 국가 적응 프로그램(NAP: National Adaptation Programme)을 실시한다. 적응보고제도(ARP: Adaptation Reporting Powers)는 유관 기관들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보고하는 도구로, 보고서를 통해 주요 기관의 기후 변화 대응 역량이 평가된다(UK, 2008; 채수미 외, 2025에서 재인용).

다. 호주: 보건·복지·환경을 연계한 국가 차원의 기후건강 전략 대응

호주는 국가 건강 및 기후 전략(National Health and Climate Strategy)을 통해 건강하고 기후에 탄력적인 지역사회와 지속가능한 넷제로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023년 12월부터 5년간 49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책 목표는 ① 보건의료체계 회복력 제고, ② 보건의료체계 탈탄소화, ③ 국제 협력, ④ 모든 정책에서 건강 고려(Health in All Policies)이다. 기후변화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변화하는 기후 속에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 역량을 강

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Interim Australian Centre for Disease Control, 2024). 호주의 국가 건강 및 기후 전략은 보건부에서 주관하는데, 독립된 기후보건 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해당하는 조직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2023).

국가 건강, 지속 가능성 및 기후 부서(NHSC: National Health, Sustainability and Climate)는 호주 질병관리청(Australian Centre for Disease Control) 산하 조직으로, 국가 건강 및 기후 전략(National Health and Climate Strategy)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NHSC는 '건강을 중심으로 한 기후 적응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주관 부서로,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기후 대응을 내재화하는 데 중점을 두며, 보건·복지·환경·사회·서비스 부문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허브 역할도 수행한다. 보건과 기후 관련 감시체계를 토대로 지표를 개발하고 정책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기후변화 관련 건강 리스크를 평가하고 교육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2023).

한편 보건의료체계 및 관련 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호주의 전반적인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 가능하고 높은 질적 수준을 겸비한 넷제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추진 과제의 정책 영역은 적응,

문은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Interim Australian Centre for Disease Control, 2024).

[표 3] 호주의 기후 건강 적응 대책의 정책 과제 우선순위와 담당 주체

적응

완화

예방·일차의료

실행 기반

원주민

② 장기적 추진(우선순위 높음+타 부서 주도)
⇒ 노인, 원주민 등 민감계층 적응 전략

3.8

국가 공중보건 위기 대응 계획

3.11

노인 돌봄서비스 기준 강화

3.12

노인 돌봄시설 설계 원칙 및 지침

4.5

보건의료 안전 및 질 위원회 지속 가능성 모듈

4.9

국가 건축환경 성능 평가 시스템 확장

4.10

탄소 배출 제로 병원 및 돌봄시설 운영

5.4

호주 NDC(국가 결정 기여)에 건강 포함

6.7

원주민(First Nations) 식량 보안

6.9

국가 주택 및 노숙인 보호 전략

6.10

원주민 주택 및 에너지

7.3

NHMRC 연구 지원

타 부서/타 기관 주도

3.5

국가 예방의료 전략

3.9

응급 대응에서의 일차의료

3.10

노인 돌봄 및 응급 대비

6.2

기후변화와 대기질

6.3

기후변화와 감염병

6.6

지속 가능한 식이 가이드라인

6.8

국가 건축 규정에 기후변화 회복력 고려

④ 우선순위 낮음+타 부서 주도
⇒ 감염병, 응급 등 의료 영역

① 우선 추진(NHSC 주도+시급성 높음)
⇒ 건강영향(위험)평가 기반 적응 계획 수립

3.1

건강 취약성 및 적응 평가

3.2

국가 건강 적응 계획 수립

3.3

건강위험평가 및 적응 계획 관련 지침 마련

3.6

기후 및 건강에 대한 원주민 리더십 구축

4.1

온실가스 배출 측정(국가 보고)

4.2

온실가스 배출 측정(관할 권한)

4.3

배출 감축 목표

4.4

탈탄소화 로드맵

4.12

유해 배출 감소(디젤 연료 등)

4.15

병원 내 지속 가능성 및 식이 가이드라인

4.16

병원 내 폐기물 감소

5.1

환경영향제품(건강기술 포함)

5.2

공급망 탈탄소화 요구 사항

5.3

기후보건연합(ATACH) 참여

7.1

보건 인력 동원

7.2

건강과 기후에 대한 연구(문헌) 검토

7.5

기후 및 건강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 강화

국가 건강, 지속 가능성 및 기후 부서(NHSC) 주도

3.4

원주민 보건 역량 구축

3.7

기후 및 건강 모니터링 지표

4.6-7

불요불급 의료서비스 감소

4.8

의료전달체계 최적화를 통한 배출량 감소

4.11

구급차 배출량 감소

4.13

아산화질소 배출 감소

4.14

비산 배출 감소

4.17

녹색 구매 장려

6.4-5

기후의 정신건강 영향 대응

6.1

국가 건강-기후행동계획

6.11

활동적인 교통(걷기, 자전거 등) 촉진

7.4

건강 및 기후 교육 자료 개발

③ NHSC 주도+시급성 낮음
⇒ 정신건강, 건강 증진, 커뮤니케이션 부문

출처: "National Health and Climate Strategy Implementation Plan, 2024-2028",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Interim Australian Centre for Disease Control, 2024. p. 10. Figure 1.

호주도 기후변화로 인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위험이 큰 인구집단을 우선순위에 두어 접근하고 있는데,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교차적 취약성(intersecting susceptibility)과 위험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호주 정부는 원주민 공동체와 고령층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게 두고 있으며, 이 밖에도 지리적 특성(열대 및 아열대 기후 거주자, 열섬 현상에 취약한 도시 지역 거주자, 농촌 및 외딴 지역 거주자), 인구사회적 특성(아동, 여성, 저소득층, 노숙자, 이민자), 만성질환자 및 장애인, 직업적 특성(야외 근로자, 기후재난 최초 대응자, 의료 종사자)을 고려해야 함을 계획에 명시하고 있다. 특히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직업군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소방관, 구급대원, 경찰관 등 기후재난 최초 대응자는 홍수, 산불, 폭염, 대기오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데다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에도 노출되어 있다. 또한 극한 기상현상의 빈도 증가, 감염병 전파의 위험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급증으로 의료 종사자도 건강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정책 추진 시 고려하고 있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Interim Australian Centre for Disease Control, 2024).

라. 국외 정책 동향의 특징 및 시사점

주요국의 기후 대응 정책을 살펴보면 주요한 특징과 국내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몇 가지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기후변화에 민감한 인구집단을 규명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미국은 국가행동계획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에 민감한 인구집단을 규명하고 지원하는 것을 강조한다. 호주는 원주민 공동체, 고령층, 아동, 여성, 저소득층, 노숙자, 만성질환자, 장애인, 야외 근로자 등 다양한 인구사회적, 지리적,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민감 인구집단을 명시하여 이들의 교차적 취약성을 고려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한국도 최근 수립된 대책에서는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민감한 인구집단뿐만 아니라 지역을 세분화하여 규명하고, 이들이 직면하는 특수한 위험을 복합적인 맥락에서 반영한 건강적응 및 보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의한 건강 영향은 넓고 장기적인 시간의 범주에서 살펴야 하므로 모든 정책에서 그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호주의 기후 적응 담당 부서는 보건, 복지, 환경, 사회서비스 부문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정책에서 건강 고려(Health in All Policies)’를 추진 전략에 포함하여 탄소 배출량 감축이 건강과 안녕 증진으로 이어지는 공동편익 추구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도 보건 분야를 포함한 모든 정부 부처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과 피해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다부문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모니터링 또는 연구의 근거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미국은 기후

변화 건강 영향을 예측하고 모델링할 수 있는 툴을 개발하며 감염성질환, 호흡기질환, 심뇌혈관질환, 정신건강 영향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영국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5년마다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호주는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분석·정량화하고, 기후 관련 건강 위험을 예측하며, 보건의료체계의 역량을 평가하는 ‘국가 건강 취약성, 역량 및 적응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감시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지역별·인구집단별 포괄적인 범위의 건강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산출하고 그 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이 같은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보건 분야 내 기후변화 대응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은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고 소외 지역 및 민감 인구집단 문제에 중점을 두는 ‘기후변화 및 건강형평국(OCCH, 2021~2025)’을, 영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감소 및 적응 문제를 다루는 ‘기후 및 건강안전센터(Center for Climate and Health Security, 2022~)’를, 호주는 ‘국가 건강, 지속가능성 및 기후 부서(NHSC)’와 ‘임시 호주 질병관리청(interim Australian CDC)’을 신설하여 국가 건강 및 기후 전략을 주관하고 실행하며,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기후 대응을 내재화하고 있다. 한국은 질병관리청 기후보건·위해대비과에서 보건 분야의 기후 적응을 일부 담당하지만, 호주 사례와 같이 건강 부문에서 ‘완화와 적응을 포괄’한 특화된 전담 조직이 부재하다. 따라서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기후 대응을 내재화하고 다양한 부문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의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나가며

2024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상승하여 일시적으로 기후위기의 임계점에 도달하였다. 사회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피해의 빈도가 늘어나면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최근 기후변화 적응에 방점을 둔 법안들이 발의되었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조사·예측·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적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법안들은 기존의 적응 정책에서 다루고 있는 기반들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후 민감계층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기후위기 피해에 대비한 기후보험 도입과 활성화 등 구체적인 대응 수단을 명시하고 있다(차지호 외, 2025; 김소희 외, 2026; 조지연 외, 2026).

이러한 변화는 기후위기를 사회·경제·건강 전반

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국민 안전과 기후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으로 관리·대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었음을 보여 준다. 법·제도 변화와 국내 정책의 발전은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차원의 적응 역량 범위가 넓어진 만큼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건강정책은 국제적 적응 흐름과 연계하되 인구집단별 건강 영향에 근거한 구체적 정책 개입을 강화하고, 보건 분야 전반의 적응 정책을 총괄·조정할 전담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23).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 관계부처 합동. (2025).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전체본].
- 관계부처 합동. (2026).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30, 2026~2030)**.
-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12. 23.).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 수립** [보도자료].
- 김소희, 우재준, 정연욱, 조경태, 임이자, 김기현, 조승환, 유용원, 김선교, 김기웅, 김미애, 이현승, 김상훈, 김용태, 백종현, 서일준, 박덕흠, 이종배, 박수민. (2026).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54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1).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

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

- 조지연, 박준태, 김성원, 강대식, 김승수, 김상훈, 김건, 성일종, 김은혜, 우재준, 김형동, 김소희, 김기현, 이양수, 김위상, 장동혁, 배준영, 서지영, 조은희, ... 임이자. (2026).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71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질병관리청. (2024. 4.). **질병관리청 기후보건 중장기계획**.
- 차지호, 박희승, 채현일, 이해식, 임호선, 윤종균, 황명선, 신정훈, 안호영, 김현정, 정을호. (2025).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269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채수미, 김혜윤, 윤강재, 박나영. (2025). **기후위기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강 증진 정책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2023). *National Health and Climate Strategy*.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Interim Australian Centre for Disease Control. (2024). *National Health and Climate Strategy Implementation Plan, 2024-2028*.
- CDC. (2020). *Preparing for the regional health impacts of climate change in the United States: a summary of health effects, resources, and adaptation examples from health departments funded by CDC's Climate and Health Program*.
- CDC. (2024). *Preparing for the Regional Health Impacts of Climate Change in the US*.
- Grabow, M. L., Stull, V. J., Hahn, M. B., &

- Limaye, V. S. (2023). A blueprint for strengthening climate and health literacy through professional adaptability. *Frontiers in Public Health*, 11(1112944).
- IPCC. (2023). *Q&A: IPCC wraps up its most in-depth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https://www.carbonbrief.org/qa-ipcc-wraps-up-its-most-in-depth-assessment-of-climate-change/>
- Peters, E., Boyd, P., Cameron, L. D., Contractor, N., Diefenbach, M. A., Fleszar-Pavlovic, S., & Stephens, K. K. (2022). Evidence-based recommendations for communicating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health. *Translational behavioral medicine*, 12(4), 543–553.
- NHS England. (n.d.). *Delivering a net zero NHS. Greener NHS*. <https://www.england.nhs.uk/greenernhs/a-net-zero-nhs/>
-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23). *Climate Change*.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climate-change-and-health>

Health Policy and Implications for the Climate Crisis in Korea and Other Major Countries

Kim, Hyeyu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s the climate crisis has come to be recognized globally as a major public health policy issue, policy discussions have expanded to address both the protection of health from climate-related risks and the sustainability of healthcare systems. Similarly, in Korea, growing attention to the health impacts of the climate crisis has prompted changes in both the scope and the approach of public health policy responses. This article reviews the current state of Korean health policy on climate change,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policy plans of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examines recent developments in health adaptation policy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countries at the forefront of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and identifies areas in which Korean health policy requires further development.